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36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서천호・정성국・이만희
김용태・조정훈・우재준
박덕흠・김선교・최보윤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낚시터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낚시터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